

## WTO 무역원활화협정 주요내용 및 영향



CONTENTS

**목 차**

**요 약**

---

I. 협정 체결 경과 . . . . . 1

---

II. 협정 주요내용 . . . . . 6

---

III. 협정 체결 의의 및 기대효과 . . . . . 11

---

IV. 활용방안 . . . . . 12

---

## 요 약

WTO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이 지난 11월 27일 타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역원활화는 무역 관련 불필요하고 복잡한 절차, 관행, 인프라 등을 제거 또는 간소화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증대시켜 교역을 확대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무역원활화는 1996년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처음 논의되었으며, 2004년 8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협상개시가 결정되었다. 이후 DDA 협상이 중단되면서 무역원활화협상도 지지부진해졌으나, 2013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발리패키지’ 협상이 타결되면서 무역원활화협상도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협상 막판 인도의 반대로 진통을 겪기도 하였으나, 지난 11월 27일 잔여쟁점이 해결되면서 협정이 최종 타결되었다. 추후 동 협정은 WTO 회원국 2/3의 수락을 통해 2015년 7월경 발효될 예정이다.

무역원활화협정 체결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성공적으로 타결된 최초의 통상협상으로 새로운 통상이슈도 WTO 체제 내에서 국제규범화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협약’ 차원에 그쳤던 기존의 무역원활화 조치들이 규범화되어 강제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무역원활화협정상의 제도를 대부분 시행 중이어서 개도국의 통관절차가 개선될 경우 협정 이행에 따른 추가부담 없이도 수출여건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협정 타결은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통관시스템 수출을 통해 우리기업이 ‘편안하게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I

**협정 체결 경과**

□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란?

- \* 무역원활화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으나, 각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정의 가능
- “무역과 관련된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절차, 관행, 인프라 등을 제거 또는 간소화, 조화, 자동화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증대시켜 교역을 확대하는 모든 조치”
- ⇒ 즉, “무역비용 절감을 위해 통관관련 절차나 제도 등을 간소화·표준화 하는 것”

**<기관별 무역원활화의 개념>**

기관	개념
WTO	· 통관절차 및 상품의 국경이동에 대한 국제무역 절차의 간소화와 조화
UNCTAD	· 법령과 규정의 조화, 절차와 문서의 단순화, 운송·정보·통신 체제 등 무역 인프라의 표준화를 통한 무역효율성 증대
OECD	· 국제무역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을 위해 요구되는 데이터의 수집, 제출, 전달 및 처리와 관련된 활동, 관례, 형식의 단순화 와 조화

-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 vs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개념 비교
  - ‘무역자유화’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 완화에 초점에 맞추어져있는 반면, ‘무역원활화’는 통관절차 간소화·표준화를 통해 무역비용을 줄이는 것이 주된 목적

□ 협상출범 배경

- 무역관련 거래비용 감소 통한 국제무역 확대
  - GATT 출범(1947) 이후 UR 협상(1986~1994)까지 8차례에 걸친 다자간 무역 협상 통해 관세장벽은 크게 완화된 반면, 무역비용은 고비용 구조 지속
    - \* (UNCTAD) 2001년 기준, 선진국의 관세율은 3.1%까지 하락 vs 무역비용은 전세계 교역액의 최대 15%
  - 이에 따라, 민간을 중심으로 무역원활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 WTO 뉴라운드 협상 모멘텀 확보 위한 「싱가폴 이슈\*」에 무역원활화 포함
  - \* 1차 WTO 각료회의서(1996, 싱가포르) 채택된 협상 이슈 : ① 무역과 투자, ② 무역과 경쟁, ③ 정부조달 투명성, ④ 무역원활화
- 당초 뉴라운드에서는 기설정외제\*(Built-in-Agenda; BIA)만 다루기로 하였으나, BIA에만 집중할 경우, 국내 반대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EU, 일본 등 선진국의 요청으로 싱가포르 이슈를 새로운 협상의제로 채택
  - \* UR 협상에서 합의되지 못해 차기 협상에서 다루기로 했던 이슈 : 농산물 수출보조금, 서비스시장 개방 등

## □ 협상경과

- (협상여건 조성) 제1차 WTO 각료회의(1996, 싱가포르) 이후 논의 본격화
  - 싱가포르 이슈에 ‘무역원활화’ 의제가 포함됨과 동시에 협상범위를 한정함으로써 무역원활화 논의에 탄력
  - (협상범위) 무역원활화 조치의 범위가 너무 클 경우, 협상이 어렵다는 공감대 형성 → 여타 WTO 협정과 혼선되지 않도록 협상범위\* 제한
    - \* GATT 제5조(통과의 자유), 제8조(수출입 수수료 및 절차), 제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
- (협상개시) 2004년 8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협상 개시기로 결정
  - 당초 계획대로면 2001년 시작된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에서 무역원활화 등을 포함한 싱가포르 이슈가 포함될 예정이었음.
  - 그러나 싱가포르 이슈가 포함될 경우, 시장개방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개도국의 반대로 협상의제로 채택되지 못했으며, 제5차 WTO 각료회의(2003.9. 칸쿤)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합의 도출 실패
  - 이후 DDA 협상 재개를 위해 2004년 8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채택한 「기본골격합의문(Framework Agreement)」에서 ‘무역원활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

- \* 싱가포르 이슈(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 정부조달 투명성, 무역원활화) 중 무역원활화 협상만 진행기로 합의

□ 기본골격합의문(Framework Agreement)에 명시된 「무역원활화」 협상의 주요 내용

- (협상범위) GATT 제5조, 제8조, 제10조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며 무역원활화와 통관절차 준수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상호간 협력 확대
- (특별대우) 통관절차 개선 등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조치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이 없을 경우, 개도국들은 협상결과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개도국 우대조항’ 포함
- (협상지원) 협상 중 WCO(세계관세기구)나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의 협조 가능토록 명문화
- (협상타결) 무역원활화 협상은 다른 DDA 협상 과제와 함께 ‘일괄타결’의 일부로 간주
  - \*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 모든 의제에 대한 협상을 동시에 타결하는 협상 방식을 의미 (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 (협상타결 근접) ‘발리패키지’ 협상타결(제9차 WTO 각료회의, 2013년 12월/발리)

\* DDA 협상의 진전을 위해 합의도출이 가능한 의제부터 우선 협상하자는 컨센서스(세부내용은 아래 참조)

- 2004. 8월 협상개시 이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협상이 진행되어 왔으나, DDA 협상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무역원활화 협상도 지지부진
- 이후 2013.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각료회의에서 「발리 패키지」 협상이 타결되면서 무역원활화 협상도 급물살

□ 발리패키지(Bali Package) 주요내용

- 조기수확\*(Early Harvest) 대상으로 협의해 온 ① 무역원활화, ② 농업(일부), ③ 개발·최빈 개도국 등 3개 부분에 걸쳐 10개의 합의문 도출(각료결정 9개, 각료선언 1개)
  - \* 조기수확 : DDA 협상을 일괄 타결(Single Undertaking)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합의 가능한 분야에서 우선 협상을 진전시키자는 새로운 협상타결 방식
- (무역원활화 합의내용) 무역관련 규정 명확화·세관협력·개도국 특별대우 등 기존내용 재확인, WTO 일반이사회 산하에 ‘무역원활화 준비위원회’ 설립 → 협정문 최종 확정 및 채택(~2014.7월)

구분	주요내용
무역관련 규정 명확화	· GATT 제5조(통과의 자유), 제8조(수출입 수수료 및 절차), 제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 등 GATT 관련 규정의 명확화 및 개선
세관협력	· 수출입 관련 정보 제공 등 세관 당국 간 협력 강화
개도국 특별대우	· 협정상의 의무이행 지원을 위한 개도국의 기술지원 능력 배양 강화

- (막판진통) 인도의 반대로 무역원활화 협정문 채택 결렬
  - 발리패키지 합의내용에 따라, 2014년 7월까지 의정서를 채택키로 하였으나, 무역원활화 협정과 식량안보 이슈를 연계한 인도의 반대로 채택 무산

□ 인도의 협상전략 : 무역원활화 협상과 별개인 WTO 농업 보조금 협상을 연계

- 2013년 8월부터 자국 농민 및 빈곤층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빈곤층 대상 식량지원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내세워 무역원활화 협정문 채택 반대
  - \* 동 프로그램은 WTO 농업협정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세부사항은 다음페이지 참조
- 인도는 무역원활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원활화 협상을 자국의 이익과 직접 관련된 식량 안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한 것으로 분석

- 인도는 WTO의 농업 보조금 산정방식(세부사항 아래 박스 참조)이 현재의 식량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 → 발리 각료회의(2013.12)에서 인도의 식량안보 해법을 2017년까지 마련하기로 하고 WTO 제소도 자제기로 합의
- 인도는 무역원활화 협상이 타결될 경우, 자국의 식량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상기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을 우려, 무역원활화 협정문 채택 반대

□ 인도의 식량안보 이슈와 WTO 농업협정 위배 가능성

○ WTO 농업협정 중 보조금 지급 관련조항

- 무역을 왜곡시키는 감축대상 보조금의 지급상한을 설정하여 규제하고 있는데, 특정 품목 생산액(또는 총 농업생산액)의 10%(선진국은 5%)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 허용

○ 인도의 빈곤층 대상 식량 무상지원 프로그램은 WTO 농업협정 위배 가능성

- 인도는 2013년 8월 발효된 ‘식량안보법’에 따라, 인도 국민의 2/3에 해당하는 8억명에게 쌀, 밀 등 식량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동 보조금 지급 규모가 인도 농업 총생산액의 1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WTO 농업협정에서 규정한 보조금 상한선 초과

○ (쟁점해소) 인도의 식량안보 이슈에 대한 美-印 간 이견 해소(2014.11.13)

- (양국 간 합의사항) 인도는 2015년 12월까지 영구적인 식량안보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제11차 각료회의(2017년)까지 영구 해법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도 잠정조치(WTO 제소 자제)가 지속됨을 명확히 함.

○ (협상타결) 무역원활화 협정 의정서 채택(2014.11.27)

- 잔여쟁점 해소 이후 지난 11.27(목)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일반 이사회에서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 TFA)을 WTO 협정 부속서 1A에 부속시키기 위한 개정의정서」 채택



⇒ (의미) 무역원활화 협정을 WTO 규범(부속서 1A :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 내로 편입시키는 것

□ 향후 일정 : WTO 회원국(160개국) 2/3의 수락 통해 ‘무역원활화’ 협정 발효 (2015년 7월 예상)  
 \* 추후 구체적인 세부일정은 2014.12.10. 개최될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제시될 예정

## II 협정 주요내용

□ 무역원활화 협정구조 : 전문(Preamble)과 3개의 절(Section)로 구성

구분	주요내용
전문	· 협정의 법적 정당성, 범위, 무역원활화의 필요성 및 개도국 지원 원칙 천명
제1절	· 핵심조항으로서 GATT 제5조, 제8조, 제10조의 명확화 및 기술적 조항 포함
제2절	· 개도국과 최빈국들에 대한 특별대우와 차별적 대우, 분쟁해결 절차 규정
제3절	· 협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무역원활화위원회’ 설립과 협정의 발효절차 명기

□ 동 보고서에서는 무역원활화 협정의 핵심조항인 제1절과, 제2절을 중심으로 서술

- (제1절) 무역원활화 협정 핵심조항으로 회원국의 「이행의무」를 규정
- (1~5조) GATT 제10조(무역규정의 공표, 시행) 개선 및 명확화
    - (개요) 정보 및 제도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조항으로 GATT 제10조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공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 (주요내용) ① 정보를 공표하는 매체를 WTO 무역원활화위원회에

통보하고 여타 회원국·수출입업체들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질의처 설립, ② WTO에서 이미 의무화한 원산지 사전판정 외 관세품목 분류에 대한 사전판정 추가, ③ 재심·상소 절차 관련 신청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부여 및 구체적 시한 규정

○ (6~10조) GATT 제8조(수출입 수수료, 절차) 개선 및 명확화

- (개요) 통관절차, 세관협력 등 세관행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무역원활화 협정의 핵심 조항 (특히, 제7조 - 물품의 반출 및 통관, 제10조 - 수출입 통관 관련 절차)

\* 상기 제1~5조의 조항들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인 것과 달리 동 조항들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

- (주요내용) ① 화물 도착 전 심사와 사후 심사에 대한 내용 규정, ② 전자 지급 의무화, ③ 통관서류 간소화 및 국제기준 사용 권장, ④ 일시 반입상품에 대한 규정

○ (11조) GATT 제5조(통과의 자유) 개선 및 명확화

- (개요·주요내용) 통과화물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통관절차 최소화

\* 기타사항 : 수출입업자 및 수송업체들이 가장 효율적인 통과노선을 사용할 권리 확인, 보증금에 대한 원칙 추가

**<무역원활화 협정 제1절(의무이행) 주요내용>**

구분	조항	주요내용
GATT 제10조 (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 개선 및 명확화	제1조 정보의 공표 및 이용 가능성	공표, 인터넷을 통한 공표, 질의처 설치 등
	제2조 시행 전 의견제출 기회, 정보 및 협의	법령 시행 전 공표 및 의견 제출 기회 제공 등
	제3조 사전심사	품목분류,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결정 제공
	제4조 불복절차	세관 당국의 행정적 결정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불복 신청권 보장
	제5조 공정성, 비차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타 조치	제고된 통제 및 조사에 대한 통보 유치, 시험 절차

GATT 제8조 (수출입 수수료 및 절차) 개선 및 명확화	제6조 수출입 관련 요금 및 수수료	수출입 관련 요금 및 수수료, 관세법 위반시 벌칙규정
	제7조 물품의 반출 및 통관	도착전 처리, 전자적 납부, 반출 및 제세 분리, 위험관리, 통관후 심사, 평균 반출시간 측정 및 공표, 인가된 영업자를 위한 무역원활화 조치, 특송화물, 부패성 상품 관련 무역원활화 조치 등
	제8조 국경기관 간 협력	무역원활화를 위한 국경기관 간 협력
	제9조 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하의 이동	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하의 이동 허용
	제10조 수출입 및 통과 관련 절차	절차 및 서류 요건, 사본의 수용, 국제표준의 사용, 단일서류접수창구, 선적전 검사, 관세사의 사용, 공통 국경절차 및 통일된 서류 요건, 거부된 상품, 일시수입 및 역내외 가공
GATT 제5조 (통과의 자유) 개선 및 명확화	제11조 통과의 자유	통과의 자유 보장
신규도입 (세관협력)	제12조 세관협력	관세법 등 위반 적발 위한 세관 간 정보교환

주 : 협정문 순서가 GATT 제10조, 8조, 5조 순으로 된 것은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이러한 순서로 회원국들의 제안을 접수했기 때문

자료원 :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 (제2절)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과 특별대우(S&DT\*) 규정

\* S&DT(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 WTO는 원칙적으로 회원국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도국 ‘경제개발 및 개혁 장려’를 위해서는  
차별대우 허용

⇒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포함하고 있는 동 규정은 여타 WTO 협정과 차별화되는  
혁신적 조치로 평가

○ (14~19조) 협정상의 의무조치(제1절)에 대한 회원국별 이행계획 규정

□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의무조치 이행계획(A, B, C 범주) 정의

범주	정의
Category A	· 협정발효 즉시 이행할 의무
Category B	· 협정발효 후 일정기간 후에 이행할 의무
Category C	· 협정발효 후 일정기간 후 이행하며, 이행을 위해 선진국의 원조 및 기술지원을 통한 능력배양이 필요한 의무

⇒ 이행계획을 3가지로 분류한 것은 국별로 무역원활화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역량 및 준비상태가 상이함을 배려한 것으로서 여타 WTO 협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치

- 개도국과 최빈개도국들은 무역원활화 협정 제1절에 명기된 의무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자국의 상황을 고려, A, B, C 3가지 범주(Category)로 분류해야 함. (세부사항은 아래 박스 참조)

- 이 중 'Category A'에 포함되는 의무는 WTO에 통보하고 이행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제15조), 우리나라는 협정상의 모든 의무를 'Category A'로 분류하여 WTO에 조기 통보(2014.5.28)

\* (전체 현황) 2014.11.27. 현재 총 50개국이 'Category A' 의무 통보

○ (20조) 분쟁해결절차(Dispute Settlement Mechanism; DSM) 유예

- 개도국들의 의무이행 지원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이들의 의무이행 계획과 관련된 무역분쟁에 대한 제소를 자제토록 규정

\* (유예기간) 개도국 : 'Category A' 의무 3년, 최빈개도국 : 'Category A' 의무 6년, 'Category B/C' 의무 8년

○ (21~22조)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을 위한 원조 제공

- 개도국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분야 확인 등을 위한 연례회의 개최

\* (사례) 개도국 기술지원과 역량강화 위한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지원 신탁 기금' 출범(2014.7)

<무역원활화 협정 제2절(개도국·최빈국 특별대우) 주요내용>

분류	조항	주요내용
S&DT	제13조 일반 원칙	개도국/최빈개도국(LDC)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적인(S&D) 대우 제공
	제14조 의무의 종류	A의무 : 개도국/LDC가 협정 발효시 즉시 이행 B의무 : 개도국/LDC가 협정 발효 후 일정 기간 후에 이행 C의무 : 개도국/LDC가 협정 발효 후 일정 기간 후에 이행하며, 원조 및 지원 제공을 통한 이행능력 획득 필요 * 각 개도국/LDC는 Section1의 규정을 어떤 의무로 분류할지 스스로 결정
	제15조 A의무의 통보 및 이행	A의무의 통보 및 이행 절차
	제16조 B/C 의무의 확정 이행일 통보	B/C 의무의 이행일 통보 절차
	제17조 조기경보체제	B/C 의무 이행 기간 연장
	제18조 B/C 의무의 이행	B/C 의무의 이행 절차
	제19조 B/C 의무간 이동	B/C 의무 간 이동 절차
	제20조 분쟁해결절차 유예	분쟁해결절차 회부 유예 기간 부여 - 개도국 : A의무 2년 - 최빈개도국 : A의무 6년, B/C 의무 8년
	제21조 능력배양을 위한 원조의 제공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
제22조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원조 관련 정보	공여국, 개도국/LDC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원조 관련 정보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 (제3절) 「무역원활화위원회」 설치 등 제도 및 이행 관련 규정

분류	조항	주요내용
제도규정	제23조 제도규정	무역원활화 위원회 설치, 국별 무역원활화 위원회의 설치 또는 유지
최종조항	제24조 최종조항	협정의 이행, GATT 1994 및 SPS/TBT 협정과의 관계, GATT 1994의 예외 및 면제의 적용, 분쟁 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의 적용 등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 III 협정 체결 의의 및 기대효과

#### □ 협정체결 의의

- (WTO 측면) 다자간 통상체제에 대한 신뢰회복, DDA 협상 모멘텀 확보
  - 무역원활화 협정은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타결된 통상협상 → 새로운 통상이슈도 WTO 체제 내에서 논의되어 국제규범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그간은 주로 FTA를 통해 해결)
  - 발리패키지에 포함되었던 10개 합의문 중 ‘무역원활화’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됨으로서, DDA 협상 진전의 모멘텀 확보
- (무역원활화 측면) 무역원활과 관련 조치 의무화 → 실질적 개선 가능
  - 기존 무역원활화 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 차원이었으나, 무역원활화 협상 타결로 이러한 조치들이 규범화 되어 강제력을 가지게 됨.
    - \* 세계관세기구(WCO)가 통관절차 간소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표한 교토협약(1973) 및 개정 교토협약(1999)

#### □ 기대효과

- (경제적 영향) 무역비용 감소로 국제무역 확대 및 신규고용 창출
  - \* 선진국 보다는 개도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클 전망 → 개도국이 무역원활화 협정의 주요 수혜국

분석기관	경제적 효과
KIEP('13)	· 거래비용 감소로 우리나라 실질 GDP 1.5~3.9% 증가, 수출 4.3~7.4% 증가
OECD('13)	· 무역원활화 조치를 통한 잠재적 무역비용 감소 * 저소득 국가 14.5%, 중하소득 국가 15.5%, 중상소득 국가 13.2%, OECD 회원국 10%
ICC* - PIIE**('13) * 국제상의 ** 피터슨연구소	· 수출 : 전세계적으로 1조 달러 이상의 수출 증가(개도국 \$5,700억, 선진국 \$4,750억) · 고용 : 2,100만개 이상의 신규고용 창출(개도국 1,800만명, 선진국 300만명)

-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협정 이행에 따른 추가부담 없이 수출여건 개선
  - 우리나라는 무역원활화 협정상의 제도를 이미 대부분 실행중이어서 협정 이행에 따른 추가부담 없으며, 협정 발효 시 개도국의 통관절차 개선과 무역비용 감소로 우리기업의 수출여건 개선 기대

## IV 활용방안

□ 우리나라는 그간 자발적으로 무역원활화 조치를 꾸준히 이행해왔고, 세계적 수준의 세관 행정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무역원활화협정'을 공세적으로 이용하여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할 필요

### □ (국가적 측면) 우리나라 통관시스템 수출확대의 계기로 활용

- 우리나라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진화된 통관시스템(Single Window) 수출 통해 우리기업이 「편안하게 수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 우리기업들에게 익숙한 통관시스템이 해외로 확산되면 우리 기업들도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수출 가능
- 우리나라는 2006년 3월부터 식약청 등 8개 검사검역기관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통해 One-stop 통관서비스 제공 중
- 무역원활화협정\*은 우리나라 통관시스템 수출 확대의 새로운 모멘텀
  - \*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구축은 무역원활화협정 제10조에 규정된 사항
- (수출실적) 현재까지 에콰도르, 탄자니아 등 8개국에 약 1억 달러 규모의 Uni-Pass 시스템 수출하고 세관행정 기술과 노하우도 컨설팅

### □ (공사차원) 통관애로 해소에 주력, TPO 간 협력 통해 'Advocacy' 활동 강화

- 통관애로는 우리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비관세장벽 중 하나이며, 무역원활화 협정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사항

- 우리기업 대상 통관애로 사례를 수시로 수집하고 정부와 공동 대응 필요
- TPO 간 협력 : 무역원활화 이행관련 정보공유 및 ‘Advocacy’ 활동 협력
- (정보공유) 각 TPO들이 수집한 교역 상대국의 통관애로 사항을 상호 간 공유하고 이를 정부에 제공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
- 각 TPO들이 교역 상대국에서 수집한 통관애로 사항은 해당국의 TPO에게 전달  
→ 해당국의 TPO는 자국 정부에 동 애로사항 전달하고 개선노력 병행





작성자

◆ 통상지원총괄팀      고일훈 차장

Global Market Report 14-051



## WTO 무역원활화 협정 주요내용 및 영향

발행인 | 오영호  
편집인 | 윤원석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4년 12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www.globalwindow.org](http://www.globalwindow.org)

---